

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1차 국가자격시험대비

1.10(토) 전국모의고사 정오표

산업재산권법 문제 6

보기 :

ㄹ.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
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,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
→ **ㄱ**.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
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,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
산업재산권법

문제 17 정답 : ④ → ②

문제 37 정답 : ⑤ → ②

민법 24번 : 모두 정답 처리

보기 : ㄹ

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제시한 견해가 통설은 아니며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 및 이전등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인도 및 필요한 서류를 교부까지 하여 매수인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에 이전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출제에 문제가 없습니다.

다만,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이라도 미리 인도한 경우에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(김형배 교수님)의 입장에 따르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또한, 대판 2009.5.28. 2008다98655 판결 사안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이 이미 인도된 이후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된 경우인데, 민법 제537조의 법리에 따라 법률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. 다만, 위 판례는 제가 출제한 사례에서와 달리 물리적 불능이 아닌 법률상 불능에 해당하고 위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은 주로 물리적 불능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그러므로 모두 정답 처리로 결정하겠습니다.